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전부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소외 ◈◆◆로부터 공증인가 ○○합동법률사무소 20○○ 증서 제○○호로, 발행일자 20○○. ○. ○. 발행인 : ◈◆◆, 수취인 : ○○○, 지급기일 : 20○○. ○. ○○. 지급지 지급처소・발행지 : 각 ○○시, 액면 : 금 10,000,000원으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 1매를 작성・교부받았으며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소외 ◈◆◆가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2. 소외 ◈◈◈는 피고에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의 지상건물 일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,000,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
- 3.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써, 소외 ◈◆◈가 피고로부터 받을 위 성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, 청구금액을 금 10,000,000원, 소외 ◈◆◈를 채 로,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○○지방법원 20○○타채○○○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정본은 20○○. ○. ○○. 피고에게 송달되어 20○○. ○○. 확정됨으로써 위 금 10,000,000원은 원고에게 전부되었습니다.
- 4. 그런데 위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났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전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소외 ◈◆◈가 위 임차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하지 않았으므로 위 전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여 원고는 소외 ◈◈◈를 설득하여소외 ◈◈◈는 위 임차건물을 20○○. ○○. ○○. 피고에게 명도 하였습니다.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을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5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부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소외 ◈◆◆↑ 위 임차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한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

1. 갑 제2호증 위 결정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O. O. 어명 또는 날인)

ㅇㅇ지방법워 귀중

			- idac.or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 www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		
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			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및 기 간	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	·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,		
기 타	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, 임차보증금반		
	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		
	것이므로, 임대차관계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		
	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함(대법원		
	1998. 10. 20. 선고 98다31905 판결).		
	•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	피전부채권으로	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, 임
	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		
	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		
	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(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56679 판결).		
	·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		
	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, 임대차보증금반환채		
	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		
	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		
	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역	인의 자력유무는	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
	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	없음(대법원 19	989. 4. 25. 선고 88다카4253, 4260
	판결).		
	·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	스 제1항의 대항.	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
	금반환채권에 대한 압취	류 및 전부명령여	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
	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		
	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		
	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		
	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,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		
	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		
	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, 결국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		
	를 부담하지 않음(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5다23773 판결).		

※ (1) 관 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· 영화 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